

1. 개정이유

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제출하는 ‘확인서’ 서식은 「공무원 징계령」으로 규정하여 왔으나, 「공무원 징계령」의 위임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으로 옮겨 신설하고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 적극행정 징계면제 사유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확인서 서식 신설(안 제7조의2 신설, 별지 제1호 서식 신설)

- 공무원 징계령에 규정된 ‘확인서’ 서식을 동 규칙으로 옮겨 신설
- ‘확인서’ 상 포상감경 제한이 되는 비위유형에 ‘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’ 추가
- ‘확인서’에 적극행정의 경우 징계등 면제 사유 사전 검토 확인란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2. 13. ~ 12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총리령 제 호

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확인서)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7조제6항제3호에 따른 확인서는

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.

제8조 중 “별지 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 서식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, 같은 서식(종전의 별지서식)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제8조(우선심사 신청서)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1조의3제2항에 따 른 우선심사 신청서는 <u>별지 서 식</u>과 같다.	<u>제7조의2(확인서)</u> 「공무원 징계 령」 제7조제6항제3호에 따른 <u>확인서</u>는 <u>별지 제1호 서식</u>과 같 다. 제8조(우선심사 신청서) ----- ----- ----- <u>별지 제2 호 서식</u>-----.